

2015년 9월 8일

대한민국 특허청 귀하

일반사단법인 일본지적재산협회
페어트레이드 위원회
사무이사 사쿠라이 카츠키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귀청 일익 번영을 기원합니다.

저희 일본지적재산협회는 1938년에 일본에서 설립된 지적재산권에 관한 민간 유자 단체로서, 일본의 주요 기업 약 900사를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전세계의 지적재산제도, 그 운용의 개선에 대해서, 의견 등을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금번에 표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첨부한 바와 같이 저희 의견을 정리하였으므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제출하는 의견의 배경, 이유 등에 대해서 기꺼이 설명드리겠사오니, 필요하시면 사양 말고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구

첨부 자료 :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문의처 :

일반사단법인 일본지적재산협회

사무국장 니시오 노부히코

TEL : 81-3-5205-3433

FAX : 81-3-5205-3391

Email : nishio@jipa.or.jp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건명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요망①
현상/문제점	개정안 18 조 1 항 1 호 및 2 항 1 호에서는, 부정 취득이나 부정 개시가 개재된 것을 알지 못하고서 영업비밀을 전득(傳得)한 사람(이하, 선의 취득자라고 칭합니다.)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발생하여 해당 영업비밀을 사용한 경우, 해당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여도 좋을지요? 선의 취득자가 사후적으로 악의로 바뀌었다고 해도, 거래 등에 의해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가 형벌의 대상이 된다면, 거래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개선 희망	선의 취득자에 의한 사용 행위 등은, 민사적 구제에 그치게 하고 형벌의 대상에서는 제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명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요망②
현상/문제점	개정안 18 조 1 항 2 호 가에서는, 외국에 있어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상정되고 있는지 불명합니다.
개선 희망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주시거나, 가이드 라인 등도 별도 작성하여 명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